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0. 남은기 위원장외 3인
나. 회부일자 : 2003. 10. 13
다. 상정일자 : 2003. 10. 13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 : 박 광재 의원

나. 제안사유

- 장애인 주차장의 설치비율을 정하여 장애인 편익에 기여하고, 민영주차장 설치 용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율을 낮추며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우리지역내 민영주차장의 신규투자활성 및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코자함.

다. 주요내용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의2 신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은 부설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안 제23조 세5항)
- "30,000천 원"을 "50,000천 원"으로, "2년거치3년"을 "3년거치5년"으로, "연 5%"을 "연 3%"로 (안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 단독주택의 범위내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의 주차대수 강화 및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별 주차대수 산정 구분 (안 별표2의 4.4-2.4-3.5.5-2.5-3)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현범)

- 본 조례안은 점증되고 있는 주차장난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입법 조례안으로서, 안 제23조제5항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을 무설주차대수의 3%로 하여, 장애인의 주차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 이 조항은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교10규정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 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령상 하자 없음.
- 안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은 민간주차장의 설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읍자금액 한개를 50,000천원으로 인상하고, 응지조건을 3년 기치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이자율은 연 3%로 변경한 내용으로 법령상 하자 없음.
- 안 별표2 제4호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설치기준을 세분화, 강화하는 조항임. 근거로는 주차장법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하고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령상 하자 없음. 안 별표2제4호의 설치 기준은 이미 광주시와 대전시에서도 시행중에 있어, 늘어나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기준이 누락되어있어 이에 대한보완이 요구되며 아울러, 주차장설치 강화로 인해 다세대 주택의 건축억제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수정의결”

첨 부 :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 2(주차장 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은 자기차고 화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은 부설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결정심사를 할 때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감안하여 50,000천원 범위안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 보조 할 수 있다.

②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자는 3년 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년 4회, 원금은 년 2회에 걸쳐 상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별표2중 4, 4-2, 4-3, 5, 5-3, 5-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m ² 초과 180m ²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80m ² 초과의 경우는 180m ² 초과 하는 12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4-2.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m ² 이하)	시설면적 130m ² 초과 200m ²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m ² 초과의 경우는 200m ² 를 초과하는 13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3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7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4-3.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세대당 면적 85m ² 초과)	시설면적 130m ² 초과 200m ²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m ² 초과의 경우는 200m ² 를 초과하는 13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3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1대로 계산한 주차 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5. 공동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60m ² 이하 (다세대주택 · 기숙사는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m ² 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7대로 계산한 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5-2. 공동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60m ² 초과 85m ² 이하(다세대주택 · 기숙사는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m ² 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5-3. 공동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m ² 초과 (다세대주택 · 기숙사는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m ² 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1.2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의 2(주차장화보 노력의무) -신설-</p> <p>제23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① ~ ④ (생략) ⑤주차장의 주차 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 1면이상의 지체부 자유자선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28조(융자금액등)①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결정심사를 할 때에는 주차장 설비비용을 감안하여 30,000천원 범위안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 보조할 수 있다. ②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후 3년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년 4회, 원금은 년2회에 걸쳐 상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생략) 1~2 (생략)</p>	<p>제1조의 2(주차장화보 노력의무)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은 자기차고 화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3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은 부설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p> <p>제28조(융자금액등)①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결정심사를 할 때에는 주차장 설비비용을 감안하여 50,000천원 범위안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 보조할 수 있다. ②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3년 거치후 5년 균등 분할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년 4회, 원금은 년 2회에 걸쳐 상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p>

<현 행>

[별첨 2]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제17조 및제18조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2. 문화 및 종교시설(관람장을 제외 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 · 요양소 · 격리병원을 제외 한다), 운동시설(골프장 · 골프연습장 · 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일부시설, 공공용시설(방송국)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3. 제1종 균형생활시설, 제2종 균형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시설면적 130m ² 초과 200m ²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m ²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m ² 를 초과하는 130m ² 당 1대를 더 한 대수
4.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20m ² 당 1대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300m ² 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7. 기타 건축물	

※ 비 고

-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종 균형생활시설중 변전소 · 양수장 · 정수장 · 대피소 · 공중화장실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문화 및 종교시설중 수도원 · 수녀원 · 제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을 제외한다)공공용 시설(방송국 · 전신선화국 · 통신용시설에 한한다)중 송신 · 수신 · 중계시설
-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내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 힘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별첨 2]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제17조 및 제18조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2. 문화·체육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3. 제1종 균형생활시설, 제2종 균형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4. 단독주택	시설면적 120m ² 초과 180m ²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80m ² 초과의 경우는 180m ² 초과하는 12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3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7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4-2.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m ² 이하)	시설면적 130m ² 초과 200m ²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m ² 초과의 경우는 200m ² 를 초과하는 130m ² 당 1대를 더한 수, 다만 3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7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4-3.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m ² 초과)	시설면적 130m ² 초과 200m ²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m ² 초과의 경우는 200m ² 를 초과하는 13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3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5. 공동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60m ² 이하(다세대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m ² 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7대로 계산한 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5-2. 공동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60m ² 초과 85m ² 이하(다세대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m ² 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5-3. 공동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m ² 초과(다세대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m ² 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1.2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m ² 당 1대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 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문화 및 접회사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다. 농작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을 제외한다)
 - 라. 공공용 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에 한한다)중 송신·수신·중계 시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 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수비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비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별표 2]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제17조 및 제18조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2. 문화 및 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3. 제1종 균형생활시설, 제2종 균형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4. 단독주택(나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m ² 초과 180m ²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80m ² 초과의 경우는 180m ² 초과 하는 12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4-2. 다세대주택, 나가구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m ² 이하)	시설면적 130m ² 초과 200m ²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m ² 초과의 경우는 200m ² 를 초과하는 13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3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7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4-3. 다세대주택, 나가구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m ² 초과)	시설면적 130m ² 초과 200m ²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m ² 초과의 경우는 200m ² 를 초과하는 13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3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5. 공동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60m ² 이하 (다세대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m ² 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7대로 계산한 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5-2. 공동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60m ² 초과 85m ² 이하(다세대주택·기숙사는 제외 한다)	시설면적 120m ² 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것을 적용한다.
5-3. 공동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m ² 초과 (다세대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m ² 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1.2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m ² 당 1대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문화 및 접회사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을 제외한다)
공공용 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에 한한다)중 송신·수신·증계 시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다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다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2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2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 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속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